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국내외 항만물류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3.10.6)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

또한 금번 개정을 계기로, 해운항만물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근거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추가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범위 설정(영 제7조제3항 신설)

공사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

투자·채무보증 등을 주요 지원수단으로 하는 공사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

공급업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해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급유선의 안전 확보 및 영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지원업무 수행근거 마련

(영 제7조 3항 개정)

「공사법」 개정에 따라 해운항만물류업에 대한 공사의 포괄적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지원사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장 조사·분석 근거는 없으며, 또한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친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사가 관련한 정부 위탁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친환경·디지털 업무 수행 근거는 부재하여 공사 자체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추진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 조사·분석(2호)과 해운항만물류분야 친환경·디지털 관련 사업 및 해운항만사업자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3호)을 추가하고자 함.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 시장·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기여하여 우리 선사 등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영 제7조의2 신설, 별표2 신설)

공사는 해운항만기업 대상 투자·보증 지원 시 신용조사 및 사업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행정서류 제출을 요청 중이며, 기업은 공사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다수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하고 있음.

해운항만사업자 등 대국민 민원 처리 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사가 「전자정부법」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공동이용의 목적과 대상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류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및 서류 위변조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공여 한도 관리기준 개선(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현행 「공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동일한 개인·법인 등에 대한 공사의 신용공여가 공사 자본 총계의 100분의 25를 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

현행 「공사법」에 따르면 전환사채, 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실제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시가 변동 및 회계 계정과목의 변동을 신용공여 관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음.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상 신용공여의 의미가 경제적 가치의 이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과, 「은행법」 상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관리 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가 변동 및 회계 계정과목의 변동을

신용공여 한도 관리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대신 공사의 경영안정성 관리를 위해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신용공여 효과를 내는 거래를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이번 개정을 통해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한 신용 공여 규모 변동 시 사실상 사전 보고가 불가능하여 법령 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 상 신용공여 한도 관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사 경영안정성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과태료 체납자의 부과금액 감경 제외(별표 개정)

「공사법」 제10조 및 제23조는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법 시행령」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과태료 감경 규정을 체납자에 대해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규정을 제외함을 명시하고자 함.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법상 제재처분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금융기관
·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2.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 조사·분석
3. 해운항만물류분야 친환경·디지털 관련 사업 및 해운항만사업자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가평가에 따라 평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바. 공사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이 생긴 경우

제21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 불능 시 이로 인하여 공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5. 공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중전의 별표)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7조의2 관련)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금융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등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중소기업확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폐기물해양배출신고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 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 금융기관 · 연구기관 등과의 업 무협력 및 교류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선 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국 내외 정책금융기관 ·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2.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 업 조사 · 분석 3. 해운항만물류분야 친환경 · 디지털 관련 사업 및 해운항 만사업자 친환경 · 디지털 관 련 지원

<신 설>

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
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
· 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
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
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감
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추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illegible]

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 라. (생략)

<신설>

<신설>

마. (생략)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시가평가에 따라 평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바. 공사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이 생긴 경우

사. (현행 마목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공사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

5. 공사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16